

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] <개정 2022. 7. 5.>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41조 관련)

1. 위반행위의 횟수가 적용되지 않는 과태료의 부과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
가. 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하고 사업을 시작한 경우	법 제70조제2항 제1호	200만원
나.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잔여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하지 않거나 다른 입주기업체에 양도하지 않은 경우	법 제70조제2항 제2호	200만원
다. 법 제15조제5항·제6항 또는 제26조를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지 않은 경우	법 제70조제1항	500만원
라. 삭제 <2016. 7. 26.>		
마.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공장등의 양도·임대 또는 사용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70조제3항 제1호	100만원
바.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1호의 외국물품에 대하여 거짓으로 반입신고를 하고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한 경우	법 제70조제2항 제4호	200만원
사.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의 내국물품에 대하여 반입신고를 거짓으로 하여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한 경우	법 제70조제2항 제5호	200만원
아.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3호의 내국물품에 대하여 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반입신고를 거짓으로 하여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한 경우	법 제70조제2항 제6호	200만원
자.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국물	법 제70조제2항	200만원

품 반입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를 제출하여 내국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경우	제8호	
차. 법 제31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	법 제70조제2항 제9호	200만원
카.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기간 동안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	법 제70조제2항 제10호	200만원
타.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반출신고를 한 경우	법 제70조제2항 제12호	200만원

2. 위반행위의 횟수가 적용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

가. 일반기준

1)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2) 1)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[1)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]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3) 나목 1)·5)·7)·8)·9)의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별로 위반기간을 기준으로 정한 세부 위반행위의 구분과 관계없이 각 세부 위반행위를 같은 위반행위로 보아 위반횟수를 산정한다.

나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1)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1호의 외국물품에 대하여 반입신고를 하지 않고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한 경우 가) 외국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1일	법 제70조제2항 제4호	10만원	20만원	40만원

이내에 반입신고를 한 경우 나) 외국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반입신고를 한 경우 다) 외국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입신고를 한 경우 라) 외국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5일을 초과하여 반입신고를 한 경우		20만원	40만원	80만원
2)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「관세법」 제245조제3항 또는 제249 조를 위반하여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경 우	법 제70조제3항 제2호	25만원	50만원	100만원
3)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「관세법」 제25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품을 적재한 경우	법 제70조제3항 제2호의2	10만원	30만원	50만원
4)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「관세법」 제214조를 위반하여 보세 운송을 한 경우	법 제70조제2항 제11호	50만원	100만원	200만원
5)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「관세법」 제215조를 위반하여 보세 운송을 한 경우 가) 운송목적지 도착일부터 1일 이내 에 보고를 한 경우 나) 운송목적지 도착일부터 3일 이내 에 보고를 한 경우 다) 운송목적지 도착일부터 5일 이내 에 보고를 한 경우 라) 운송목적지 도착일부터 5일을 초 과하여 보고를 한 경우	법 제70조제2항 제11호	10만원	20만원	40만원
		20만원	40만원	80만원
		30만원	60만원	120만원
		50만원	100만원	200만원
6)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「관세법」 제2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세운송을 한 경우	법 제70조제2항 제11호	50만원	100만원	200만원
7)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「관세법」 제216조제2항을 위반하	법 제70조제2항 제11호			

<p>여 보세운송을 한 경우</p> <p>가) 보세운송 기간 만료일부터 1일 이내에 보세운송을 종료한 경우</p> <p>나) 보세운송 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보세운송을 종료한 경우</p> <p>다) 보세운송 기간 만료일부터 5일 이내에 보세운송을 종료한 경우</p> <p>라) 보세운송 기간 만료일부터 5일을 초과하여 보세운송을 종료한 경우</p>		10만원	20만원	40만원
<p>8)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반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</p> <p>가) 외국물품을 반출한 날부터 1일 이내에 반출신고를 한 경우</p> <p>나) 외국물품을 반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반출신고를 한 경우</p> <p>다) 외국물품을 반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출신고를 한 경우</p> <p>라) 외국물품을 반출한 날부터 5일을 초과하여 반출신고를 한 경우</p>	법 제70조제2항 제12호	10만원	20만원	40만원
<p>9)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「관세법」 제157조의2를 위반하여 물품을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하지 않은 경우</p> <p>가) 반출기간 만료일부터 1일 이내에 반출한 경우</p> <p>나) 반출기간 만료일부터 5일 이내에 반출하는 경우</p>	법 제70조제3항 제3호	10만원과 반출물품 원가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	10만원과 반출물품 원가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의 1.5배	10만원과 반출물품 원가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의 2배

<p>다) 반출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반출한 경우</p>		<p>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</p>	<p>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의 1.5배</p>	<p>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의 2배</p>
<p>라) 반출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반출한 경우</p>		<p>30만원과 반출물품 원가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</p>	<p>30만원과 반출물품 원가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의 1.5배</p>	<p>30만원과 반출물품 원가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의 2배</p>
<p>마) 반출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여 반출한 경우</p>		<p>40만원과 반출물품 원가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</p>	<p>40만원과 반출물품 원가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의 1.5배</p>	<p>40만원과 반출물품 원가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의 2배</p>

10)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0조제1항 에 따른 세관장의 국외 반출명령 또 는 폐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70조제3항 제4호	25만원	50만원	100만원
--	------------------	------	------	-------